재정지원사업예산중복집행방지위원회규정

제정 2019.08.01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의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간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예산중복방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재정지원사업간의 중복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
 - 2. 중복집행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
 - 3.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예산계획 방지에 관한 사항
 - 4.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지출 방지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재정지원사업간 중복집행방지와 관련된 제반사항
- 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 - ②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위원은 재정지원사업 총괄담당자(당연직) 및 실무책임자로 하다.
- 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으로 하다.
- 제5조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제7조(관계 교직원의 출석)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또는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.
- 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